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9월 1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즉시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20. 9. 17(목)	담당부서	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장수철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나한균 사무관(044-203-5882) 이창룡 주무관(044-203-5885) 이은주 주무관(044-203-5887)

무역위원회, 「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」 및 「신발 상표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판정

- 제404차 무역위원회 개최('20.9.17.) -

□ **무역위원회**(위원장 장승화)는 **'20. 9. 17.(목) 제404차 회의**를 개최하여 **「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」** 및 **「신발 상표권 침해」** 조사건에 대한 **불공정무역행위**를 **판정**하였음

□ **「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」** 건은 국내기업인 ㈜화이트스톤이 자사의 **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**을 홍콩 등에서 **수입하여 판매**한 국내기업 'A'와 이를 **해외에서 국내로 공급**한 해외기업 'B'의 행위가 **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**된다고 **주장**하면서 **조사를 신청**한 건임

○ 무역위원회는 신청인(㈜화이트스톤)과 피신청인(국내기업 'A', 해외기업 'B')을 대상으로 **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**,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,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**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**한다고 **판정**하였음

○ 이에 따라, 피신청인 'A'와 'B'에 조사대상물품의 **수입·판매 행위 중지, 재고 폐기처분,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**하였음

□ 「**신발 상표권 침해**」 건은 국내기업 'C, D, E'가 구치오구치쏘시에떼 퍼아찌오니(이하 '구찌')의 **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·판매한** 행위가 **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** (사)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**조사**한 건임

○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(구찌)와 피조사인(국내기업 'C, D, E')을 대상으로 **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,**

- 피조사인 'C'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피조사인 'D'에게 판매하고, 'D'는 다시 피조사인 'E'에게 판매, 'E'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**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**한다고 **판정**하였음

○ 이에 따라, 국내기업 'C, D, E'에 조사대상물품의 **수입·판매행위 중지, 재고 폐기처분,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**하였음

□ 무역위원회는 "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·상표권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, '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**'를 통해 6~10개월 이내에 **신속히 구제**받을 수 있다며,

○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'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'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"고 밝혔음

*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시 소송(통상 12개월 이상 소요)에 비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에 따라 통관보류 연장도 가능 (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.ktc.go.kr 참조)

*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,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가능 (50% 범위내 5,000만원까지, 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(02-2124-3165))

붙임 : 1. 「곡면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2. 「신발 상표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나한균 사무관(044-203-5882), 이창룡 주무관(044-203-5885), 이은주 주무관(044-203-5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**「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**

□ 조사 개요

○ **(신청인)** ㈜화이트스톤

○ **(피신청인)** 국내기업 'A'사, 해외기업 'B'사

○ **(조사대상물품)** 곡면 커버 보호필름

○ **(특허권)** ①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,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(특허 제2038740호)
②곡면 커버 보호필름, 이의 부착장치 및 이의 부착방법(특허 제1938515호)

○ **(신청이유)** **특허권 침해 혐의**가 있는 **조사대상물품**을 피신청인이 **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및 수입·판매**

□ 조사 결과

○ **(특허권 ①)** 신청인은 특허권자로 해당 권리는 유효

- 조사대상물품은 특허발명 ①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**특허권 ①을 침해**

○ **(특허권 ②)** 신청인은 특허권자로 해당 권리는 유효하나,

- 조사대상물품은 특허발명 ②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므로 **특허권 ②를 침해하지 않음**

○ **(국내공급 및 수입·판매)** 국내기업 'A'사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입·판매하고 해외기업 'B'사가 국내로 공급한 사실 확인

⇒ 피신청인이 특허권①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수입·판매한 행위는 **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**

□ 판정 및 후속조치

○ 피신청인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여부 결정(제404차 무역위, '20.9.17.)

* 제재조치 : 시정명령(수입 및 판매 중지, 재고 폐기 등) 및 과징금 부과 처분

붙임 2 「신발 상표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**(제보인)** (사)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

- **상표권자 :**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(이하 '구찌')

○ **(피조사인)** 국내기업 'C'사, 'D'사, 'E'사

○ **(조사대상물품)** 신발

○ **(신청이유) 구찌 상표권의 침해 혐의**가 있는 **조사대상물품**(신발)을 피조사인들이 네덜란드에서 **수입하여 국내 판매**

<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물품 >

이 사건 등록상표		조사대상물품
GUCCI 제0070354호	GUCCI 제0072780호	
 제1057148호	 제1360799호	

□ 조사 결과

○ 피조사인들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인 '신발'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바, 피조사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*에 해당

*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·판매하는 행위(제1항 제1호)

□ 판정 및 후속조치

○ 피조사인들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최종 결정(제404차 무역위, '20.9.17.)

* 제재조치 : 시정명령(수입 및 판매 중지, 재고 폐기 등) 및 과징금 부과 처분